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선교·박수민·박준태

이인선 • 이헌승 • 서일준

구자근 · 김상훈 · 박충권

윤상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 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·처리하고 있음.

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 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'솜방망이 처벌'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, 신고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 뢰, 고발,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 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

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, 제18조의9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의9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.

제18조의10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	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			
스포츠비리의 신고) ①・②	스포츠비리의 신고) ①・②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
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	③			
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				
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				
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				
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				
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</u>			
	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	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	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			
・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			
	항에 따라 징계 요구 결과를			
	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			
	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			
	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	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	
제18조의10(신고·상담 및 임시	제18조의10(신고·상담 및 임시			
보호 시설의 설치 등) ①・②	보호 시설의 설치 등) ①・②			
(생략)	(현행과 같음)			
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	3			
따른 시설에서 신고・상담 업				

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	
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	
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	
아니 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

	ا	-J	11	1 – .1
	· <u>다</u>	난,	<u> 신고스</u>	<u> </u>
<u>동의한</u>	때에는	그란	하지	아니
<u>하다.</u>				